

농특부락조성사업

농림부에서는 73년도 농특사업을 과거의 지구내 품목별 소단지조성 방침을 지양하고 부락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72년도에 조성한 우수 새마을중 부락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 새마을에 대하여 농특부락 조성기준에 의한 기준선 까지 조성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부락의 기간 품목으로 정하고 73년도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1 조성기준

양잠새마을·농가의 70%이상 목표

양송이 식마을:재배사 2,000명 이상목표

과수 새마을: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해당되며 전면적의 30% 이상을 목표.

감귤새마을:감귤, 유자로서 농가의 30%, 전면적의 70%이상 목표

한우새마을·육성우, 비육우가 해당되며 농가의 80% 이상 목표.

수산양식·굴, 미역으로 농어가의 30%이상 목표

밤나무새마을:농가의 40%이상 목표

2 사업량의 배정원칙

지구내 품목별 사업물량이 1개군으로 계획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량을 전량배정하고 시와 군으로 합병되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시와 군의 불량을 할당받아 군수가 배정한다.

시장 군수는 해당물량을 소단지별로 대상자에게 배정함에 있어 대상능가를 경영형태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 기준에 의해 배정

○ 대상자

당해품목 또는 사업을 경영 또는 관리할 충분한 경영능력과 의욕을 가진자로서 당해 품목의 경영에 필요한 일정 규모의 경지나 가축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사업 성과년도 까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자.

3. 용자 신청

대상 농가로 선정된 자는 자기 해당분 사업량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 집행계획 테두리내에서 사업실시 계획을 세워 용자 수속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즉 각 취하고 사업을 능동적으로 실시한다.

4. 품목별 사업 실시 요강

축산부문인 한우육성비육우 및 낙농만 소개한다.

○ 한우 육성

가. 대상자 선정

① 한우 새마을로 선정된 부락에 거주하는 무축 농가로서 사료자급이 가능한 농가에 1호 1두 입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앞으로 5년이상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송아지 생산사업을 계속 영위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

③ 전업 대상자중 호당 6두이상 입식할 경우에는 기정초지 1ha당 1.5두 기준면적을 확보하였거나 초지 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한 자를 선발한다.

호당 지원규모

부업규모시 1두 전업규모시 2-20두로 2두 이상 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비 육 우

비육기술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연 평균 2-3회전 이상 비육우를 생산 출하할 수 있는 농가·비육우 입식은 전업 비육 입식을 권장하는데 1ha의 기성초지를 확보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

전업(5-30두)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 낙 농

한국 낙농주식회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대상지역은 경기도 부천·전남 광산지대가 중심이 된다.

용자내역

농협 재특자금으로 연리 9% 육성시에는 두당 8만원 비육(2~5마리)시에는 15만원 정도 용자된다. 연리 9%로 통상 2년 거치 3년상환이다.

지원내역

1972년도 육성우가 40,900두 비육우가 2,100두 지원되었고 1973년도에는 육성우가 42,410두 비육우가 6,150두 낙농이 1,700두 지원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관할 군수 및 시장의 책임하에 있고 용자 지급은 시 군 조합에서 시행되므로 관계처에 대상 여부를 타진하면 된다.